

2018년('17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상담 매뉴얼

I.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총급여액 등이 전부 모두가 있는 경우 주된 소득자가 신청

*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1. 가구 요건	● (근로장려금) '17.12.31. 현재 배우자나 18세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거나, 신청자가 30세 이상일 것 ● (자녀장려금) '17.12.31. 현재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 부양자녀는 중증장애인이거나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와 부양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table><tr><td>가구원 구성</td><td>단독 가구</td><td>홀벌이 가구</td><td>맞벌이 가구</td></tr><tr><td>근로장려금</td><td>1,300만원</td><td>2,100만원</td><td>2,500만원</td></tr><tr><td>자녀장려금</td><td colspan="3">4,000만원</td></tr></table>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조정률),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3.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 '17.6.1. 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 '17.6.1. 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 재산합계액이 1억 이상 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4. 기타 요건	－ 2017.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닐 것 － 2018년 3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가 아닐 것 (자녀장려금만 해당)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동거하는 70세 이상의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2017년도 기간 중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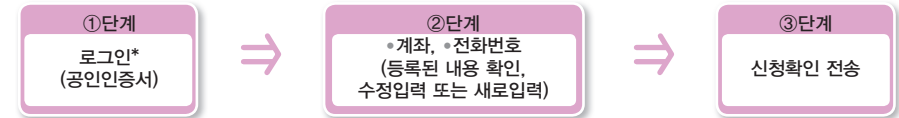
* 가구원이란? 거주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을 말하며, 취학·질병·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

II. (전자)신청방법

① 인터넷 신청

● 간편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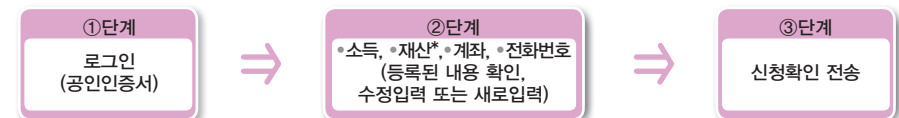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이용시간 : 5.1. ~ 11.30. 이용시간 : 매일 06시 ~ 24시)



* 회원 가입없이 본인인증(공인인증, 휴대전화, 신용카드)만으로 신청가능

● 일반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이용시간 : 5.1. ~ 11.30. 이용시간 : 매일 06시 ~ 24시)



* 재산: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본인의) 부동산, 주택간주전세금, 상가실제보증금, 자동차가액

② ARS 신청 (이용시간 06 ~ 24시)

● 1544-9944로 전화하여 [2번]을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안내문에 기재된 권장시기, 평일 0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

③ 모바일 신청 (이용시간 06 ~ 24시)

●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



Ⅲ. 신청기간과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8년 5월 1일 ~ 5월 31일(정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기한 후)

*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결정 금액의 90%만 지급

- 신청 시 첨부서류

-(소득 증거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증거서류 중 해당 서류 제출

- | | |
|------------------------|-------------------------|
|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상 사본 | 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재산 증거서류)

- ① 임차한 주택의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을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유상 임차시), 임대차확인서(계약서 분실시), 무상임차확인서(무상임차시)
-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 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간주전세금 적용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Ⅳ. 심사진행 안내

- 인터넷 조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Ⅴ. 지급

-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지급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음
- 국세채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

Ⅵ.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신청자가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환수 및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2년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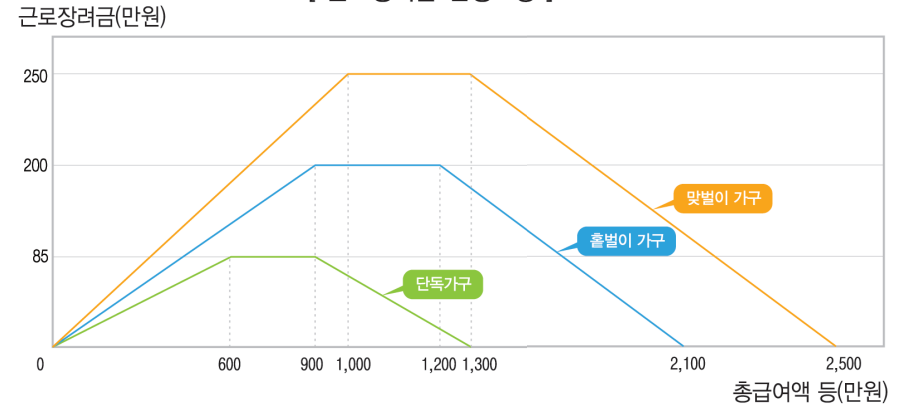
Ⅶ. 근로·자녀장려금 산정 (계산)

-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표에 의해 산정하고, 감액요인 등을 반영하여 환급액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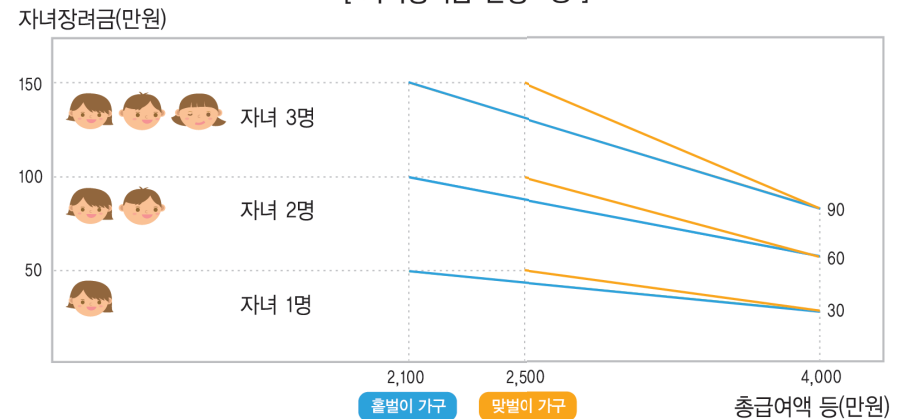
*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조정률)을 합한 금액을 말함

- 장려금 산정금액 모형

[근로장려금 산정모형]



[자녀장려금 산정모형]



-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까지 체납액 충당
'총급여액 등'의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가산세 부과 (1일 0.03%)